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21
----------	-------

발의연월일 : 2026. 5. 19.

발 의 자 : 김태호 · 백종현 · 윤영석
박충권 · 우재준 · 조경태
조배숙 · 강명구 · 정점식
박정하 · 주호영 · 엄태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부정수급 행위를 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사업자 등을 소관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무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현장에서 보조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며 위반행위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를 처분 권한을 가진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절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공공기관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

록 규정하여 국고보조금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6항 신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수행 대상 배제 등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보조금수령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